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6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의자 : 최은석 · 구자근 · 김상훈

진종오 · 추경호 · 이상휘

김승수 · 유용원 · 김은혜

박수영 · 이인선 · 김선교

김장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3페센트”를 “10페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페센트”를 “10페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페센트”를 “10페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